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9-61호
2019. 9. 20.(목)

선람	기관(부서)의 장

차 례

고 시(3)

-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고시 제2019-108호) ·····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9-109호) ·····2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고시 제2019-110호) ·····3

공 고(1)

- 의료급여증 도용 및 부정수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결정통지 및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9-812호) ·····4

공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9-108호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제3항 및 시행령 제11조의12제4항에 따라 직권부여한 상세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5번길 11 외 108건

연번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호수		
	도로명	건물번호	동	층	호
(별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7)에 문의 또는 대덕구청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1(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에 따라 부여합니다.

○ 상세주소 변경 등

-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12(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절차)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도로명 주소 대장에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상세주소(동·층·호)를 임의 사용하여 공공기관 발송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민원 발생 및 그에 따른 국가 경쟁력의 약화가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어 각종 공적 장부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9-10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 여 사 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 고
오정동 477-6, -10	대전로1020번길 23	2019. 9. 20.	건물신축	대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0,2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대화동 1-54	대화로50번길 47	2019. 9. 20.	건물신축	대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5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미호동 415-1	대청로 447	2019. 9. 20.	건물신축	대청댐의 명칭을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 2019 - 110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준점 종류	기준점 번호	전		후		비 고
		평면직각종횡선좌표		평면직각종횡선좌표		
		X 좌 표	Y 좌 표	X좌표	Y좌표	
도근점	2740	-	-	326371.40	239008.08	신규설치
도근점	〃	-	-	426679.062	239079.737	세계측지계 관측
도근점	2741	-	-	326503.13	239007.94	신규설치
도근점	〃	-	-	426810.799	239079.558	세계측지계 관측
도근점	2742	-	-	326594.55	238984.51	신규설치
도근점	〃	-	-	426902.220	239056.099	세계측지계 관측
도근점	2743	-	-	326710.59	239004.70	신규설치
도근점	〃	-	-	427018.261	239076.256	세계측지계 관측
도근점	2744	-	-	326698.33	238930.03	신규설치
도근점	〃	-	-	427005.981	239001.601	세계측지계 관측
도근점	2745	-	-	326813.76	238864.34	신규설치
도근점	〃	-	-	427121.388	238935.876	세계측지계 관측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690-1 외
측 량 년 월 일	2019년 9월 17일
측량성과보관장소	대덕구청 민원지적과
비 고	표지재질(철재) 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812호

의료급여증 도용 및 부정수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결정통지 및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우리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위법사항을 범한 것으로 통보받아 의료급여법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동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에 의거 부정수급으로 발생한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등기우편으로 부당이득금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의료급여증 도용 및 부정수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결정통지 및 납부고지 공시송달
2. 의료급여법 제15조, 의료급여법 제23조, 민법 제74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3. 공고기간: 2019.09.20.~2019.10.11.(21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금액	비고
문○애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166번길 5*, *동 40*호 (가장동, 대신아트빌)	폐문부재	1,655,890원	의료급여증 도용 및 부정수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결정통지 및 납부고지

5. 공시송달내용 및 유의사항

○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를 요청하오니 2019.10.11.(금)까지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654-099192-17105 (대덕구청 의료기금(특)수입금출납원)

6. 문의사항 : 대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담당(☎ 042-608-6383)